

#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 년 6 월 18 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인: 공보실장 손알수  
 소재: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 차 례

|          |                          |       |    |
|----------|--------------------------|-------|----|
| △조       | 례                        | ..... | 3  |
| 제 675 호  | 서울특별시 시영주택관리조례중 개정조례     |       |    |
| 제 676 호  | 서울특별시 동장정원조례중 개정         |       |    |
| 제 677 호  | 재개발사업가격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       |    |
| △규       | 칙                        | ..... | 7  |
| 제 1185 호 |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조례 시행규칙개정     |       |    |
| 제 1186 호 | 서울특별시 직계중 개정규칙           |       |    |
| 제 1187 호 | 별도발행                     |       |    |
| 제 1188 호 | 별도발행                     |       |    |
| 제 1189 호 | 서울특별시 의무축타규정중 개정규칙       |       |    |
| 제 1190 호 |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설치조례 시행규칙중개정 |       |    |
| 제 1191 호 | 서울특별시 평가교수단 시행규칙중 개정     |       |    |
| △사       | 령                        | ..... | 13 |
| △교       | 시                        | ..... | 31 |
| 제 72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       |    |
| 제 73 호   | 도시계획 시외버스 정류장 결정         |       |    |
| 제 74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       |    |
| 제 75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       |    |

|         |                                       |    |
|---------|---------------------------------------|----|
| 제 76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    |
| 제 77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    |
| 제 78 호  | 도시계획 소로 신설 및 변경                       |    |
| 제 79 호  | 71년도 서울특별시 제2 회추가경정예산                 |    |
| 제 81 호  | 공유수면접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
| △공 고    |                                       | 43 |
| 제 219 호 | 회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장용지변경지정                 |    |
| 제 221 호 | 강변5로 유료도로공사                           |    |
| 제 223 호 |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3 공구) 환지에정지 지정 |    |
| 제 228 호 | 환지에정지 변경                              |    |
| 제 235 호 | 영동공무원 아파트내 점포매각 입찰                    |    |
| 제 236 호 |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모                  |    |
| 제 237 호 |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    |
| 제 240 호 | 중소기업 수출품 생사지정 업체변경                    |    |
| 제 241 호 | 김포, 경인, 역촌, 시흥, 도봉 토지구획<br>정리사업 기간 연기 |    |
| 제 242 호 | 영동 공무원 아파트내 점포매각 입찰                   |    |
| 0       | 울중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시험 합격<br>자 발표           |    |
| 0       | 직인 및 계인 개각공고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영주택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75 호

서울특별시시영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시영주택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제 3 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동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76 호

서울특별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동장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등장정원 및 관할구역포증

| 구명   | 동명                                 | 동장정원수 | 등장명     | 관할구역  |
|------|------------------------------------|-------|---------|---|
| 영등포구 | 여의도동<br>영등포동6가<br>영등포동7가<br>영등포동8가 | 1     | 영등포제3동장 | 여의도동, 영등포동6,7,8가 일원과 영등포동29의57 및 94의22 도로경계이서지역 |

을

| 구명   | 동명                                 | 동장정원수 | 등장명             | 관할구역   |
|------|------------------------------------|-------|-----------------|--|
| 영등포구 | 여의도동<br>영등포동6가<br>영등포동7가<br>영등포동8가 | 1     | 여의동장<br>영등포제3동장 | 여의도동 일원과 영등포동6,7,8가 일원과 영등포동29의57 및 94의22 도로경계이서지역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77 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및 건축물가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재개발사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9인으로 구성하되 재개발사업지구별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9조제 3항 각호에 정한 비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직무를 출석한 때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장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시장이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종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규 칙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월 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185 호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내지 제 7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를 제 3 조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상자가 사망자인 때는 본인의 명의로 하되 상속  
자에게 수상한다.

제 11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①서울특별  
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2. 각분과위원회의 수상자 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 11. 11

◎서울특별시규칙제 1186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인사과) ①인사과에 조직관리계, 보임제 1계, 보임제 2계, 교과계와 전형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관리계

- (1) 직제 및 정원관리
- (2) 인사제도와 조직운영에 관한 기획 연구지도
- (3) 직무 배정 및 권한의 위임.
- (4) 직위분류에 관한 사항
- (5)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
- (6) 임시직원 소요판단
- (7) 공무원의 후생과 보수
- (8) 직원상조회 운영



(9) 직원 채위향상

(10) 과내 과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보임제 1 계

행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1)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직위해제 및 전입전출

(2) 신상변동 및 신분제 관한 조회와 제증명 발급

(3) 각종 시험요구 및 임용 후보자의 등록과 추천의뢰

(4) 인사기록 정리보관 및 인사통계

(5) 경력 평정과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6) 시간외 결직허가

(7) 재산 등록

(8) 기타 보임제 2 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임업무

## 3. 보임제 2 계

행정직 이외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1)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직위해제 및 전입전출

(2) 신상변동 및 신분제 관한 조회와 제증명발급

(3) 각종 시험요구 및 임용 후보자의 등록과 추천의뢰

- (4) 인사기록 정리보관 및 인사통계
- (5) 경력평정과 승진 심사위원회운영
- (6) 시간외 겸직허가
- (7) 재산 등록
- (8) 군사원호대상자 취업배정 (행정직, 고용원 포함)
- (9) 연금사무 및 공무원 건강진단 (행정직, 고용원 포함)

#### 4. 교과계

- (1) 공무원의 근무평정 및 근무평정 조정위원회 운영
- (2) 공무원의 재청가원 및 출근부 정리
- (3)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4) 보통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 (징계사항)
- (5) 복무에 관한 비위공무원의 조사처리
- (6) 공무원의 해외출장 및 관외출장
- (7)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 (8) 공적 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창
- (9) 직원 신상 상담소 운영

#### 5. 전 형 계

- (1) 4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특별시험
- (2)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전직시험과 기타시험

- (3) 공무원의 교육훈련
- (4)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
- (5)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 (6) 인사위원회 (징계에 관한 사항 제외) 운영
- (7) 공무원의 해외 파견자 추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무축타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189호

서울특별시 의무축타규정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의무축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19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1 조제 1 항제 1 호 " 204명 " 을 " 232명 " 으로 한다.

제 2 조제 2 항중 " 극빈한 " 을 " 영세근로 " 로 하고

동조동항제 1 호중 " 60명 " 을 " 80명 "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평가교수단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191 호

서울특별시평가교수단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평가교수단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4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평가교수에게는 월수당 10,000 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1년 10월 21일

공무원교육원 (휴직중) 서기관 한 연 국  
복직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

◎ 197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건설국 영선과 건축기좌 한 기 호  
건축기정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건설국 영선과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산업국 녹지과 지방농림기좌 이 형 식  
농림기좌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예산과 행정주사 정 병 덕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예산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김 현 철

행정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양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유재석

행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보 최성웅

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강원도춘성군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김유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보건기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경기도양평군 지방농림기사보 홍종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경기도양주군 지방행정서기 지천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고창군 지방행정 서기보 강 종 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 서기보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농림부통계조사과 행정주사 안 의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 호봉(근속가봉월 1,080 원)을 급함

운수계 2 과 근무를 명함

전남나주군 지방행정주사보 양 재 홍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경북통계조사과 지방행정주사 유 부 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청소계 2 과 근무를 명함

철도청영업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 김 진 명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경기도의정부시 지방행정주사 윤 희 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경북군의군 행정주사보 김 홍 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관리제 1과 근무를 명함

강원도원주시 농림기사보 박 용 목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림기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녹지과 근무를 명함

경남김해군 지방행정주사 김 이 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철도청 행정주사보 이 동 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단지조성과 근무를 명함

경북 치수과 지방행정주사 손 용 옥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경남남해군 지방행정주사 정 준 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보 경북성주군 이 승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관광과 근무를 명함

경북영천군 지방행정주사보 김 제 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경남삼천포시 지방행정주사 정 규 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5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경남교육위원회 건축기사보장 현 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에 입함

1호봉(근속가봉월 560원)을 급함

건축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박 상 수

관세청 진출을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박 병 철

서대문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김 차 봉

서대문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임 태 반

영등포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정 필 록

영등포구

|         |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박 | 춘 | 원 |
| 마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최 | 인 | 구 |
| 마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이 | 완 | 수 |
| 마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유 | 양 | 준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윤 | 후 | 식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유 | 병 | 열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한 | 필 | 진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김 | 정 | 선 |
| 서 대 문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한 | 유 | 석 |
| 서 대 문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안 | 희 | 권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차 | 희 | 열 |
| 영 등 포 구 |         |   |   |   |
| 성 동 구   | 지방행정서기보 | 분 | 명 | 순 |

영 등 포 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황 천 찬

영 등 포 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정 오

영 등 포 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고 희 영

영 등 포 구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한 규 열

서 대 문 구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일 중

서 대 문 구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미 자

서 대 문 구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형 태

서 대 문 구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장 영

마 포 구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세 중

마 포 구

마포병원 지방행정서기 김 상 용

성동구수도 사업소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권 승 만

서대문병원

남부병원 지방행정서기 박 승 찬

개 생 원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서 정 순

중 구

통계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 홍 순

통계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수

민방위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주택행정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박 순 철

주택행정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청소계 2 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 종 민

청소계 2 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서대문구부청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근

서대문구부청장 직무대리를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마포구부청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유근용  
마포구부청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용산구부청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박승택  
용산구부청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공무원교육원서기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안병태  
공무원교육원 생무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공무원교육원교학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안종윤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종로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유인형  
종로구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정영섭  
동대문구 수도사업소장에 명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성동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안 기 호

성동구 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성북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조 정 열

성동구 수도사업소장서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욱

서대문구 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마포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성 증 신

마포구 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용산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 문 계

용산구 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 구 현

영등포구수도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광주대단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호

광주대단지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아파트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석

아파트 관리사업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성동구청호출장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인태명

성동구 천호출장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성동구연주출장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백남인

성동구 연주출장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성북구노해출장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장양관

성북구 노해출장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보함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역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장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포함

환지과장 직무대리 지방토목기과 유 명 규

환지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토목기정

보건제 1과장 직무대리 지방의무기과 윤 자 현

보건제 1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지방 의무기정

산입국녹지과 농림기과 허 형 식

산입국 녹지과장 작무대리를 명함

◎ 197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산입국상징과장 서기관 김 두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무과장에 포함

내무부 서기관 정 덕 상

서울특별시 비상계획관실 동원과장에 포함

◎ 1971년 11월 4일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최 장 훈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오 진 완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영등포병원 지방행정주사보 전 동 수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정신병원 지방행정서기 김 병 숙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근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동부병원 지방약무기과 권 오 윤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남부병원 지방약무기과 이 영 주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정신병원 지방약무기과 안 종 각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1년 1월 6일

기획과 지방행정서기보 황 인 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1년 11월 7일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원 (X-선) 조 문 호  
중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1년 11월 9일

농정과 지방수의사보 홍 순 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1년 11월 10일

성동구보건소 지방수의사보 정 홍 환  
경기도 진출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서기관 김 봉 길  
중구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서기관 권 이 금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1년 11월 11일

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보임제장) 장 세 환  
인사과 보임제 1과장에 보함

인사과 (연금후생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필 우  
인사과 보임제 2과장에 보함

◎ 1971년 11월 12일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 상 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이 원 점  
감사과 파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이 종 록  
업무과 파견근무를 명함

◎ 1971년 11월 15일

경기도김포군 지방행정서기 김 계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경남거창군남하면 지방행정서기 오 정 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서기관 김 봉 길  
지방서기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 수도사업소장에 보함

영등포구 서기관 권 이 금  
지방서기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장에 보함

◎ 1971년 11월 19일

교통연구단 지방행정주사 이 종 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1년 11월 20일

영등포병원 지방행정주사보 전 동 수  
직위해제 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정신병원 지방행정서기 김 병 숙  
직위해제 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종로구 행정주사보 김 광 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 1971년 11월 23일

동부병원 지방약무기좌 권 오 윤  
직위해제 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남부병원 지방약무기좌 이 영 주  
직위해제 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정신병원 지방약무기좌 안 종 각  
직위해제 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1년 11월 25일

토목과 지방토목기과 최 석

71.12.20까지 주택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홍 섭

71.12.20까지 주택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환지과 지방행정주사보 변 영 일

71.12.20까지 주택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광주대단지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김 호 정

토목과 근무를 명함

◎ 1971년 11월 27일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보 박 종 권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1년 11월 30일

송 윤 석

조건부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도시계획과 가로계획과장에 포함

정 종 윤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시민과 문서통제제장에 포함

의견 견책에 처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2호

서울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인가하였다고 고시합니다. 관계고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 및 사업시행자인 국회 공무원 주택조합(국회내무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1. 11.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내 영등포구 신림동 산 105-3의 13필지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국회 공무원 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면적 : 55,731 m<sup>2</sup>
3. 시행자의 성명, 주소 : 국회 공무원 주택조합  
국회내무위원회 국회 공무원 주택단지 조합  
조합장 이 종 수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1971. 11. . . .  
준공 1972. 10.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7. 가로시설

| 등급 | 번호 | 류별 | 폭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소로 | 1  | 1  | 10 m | 161 m | 19 | 18 |    |
| "  | 2  | 2  | 8 "  | 345 " | 17 | 10 |    |
| "  | 3  | 3  | 6 "  | 354 " | 1  | 8  |    |
| "  | 4  | 3  | 6 "  | 400 " | 1  | 7  |    |
| "  | 5  | 3  | 6 "  | 325 " | 6  | 17 |    |
| "  | 6  | 3  | 6 "  | 140 " | 14 | 15 |    |
| "  | 7  | 3  | 6 "  | 140 " | 7  | 15 |    |
| "  | 8  | 3  | 6 "  | 40 "  | 3  | 2  |    |
| "  | 9  | 3  | 6 "  | 40 "  | 5  | 4  |    |

8. 공원시설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내부아동공원 | 영등포구 선림동 산 105 | 992 m | 건설부고시 제 350 호 |

끝.

◎서울특별시고시 제 73 호

도시계획 시외버스 정류장 결정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시외버스 정류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증감에 공함.

### 2. 시설 조서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시의버스공<br>영주차장 시설 | 서대문구불광동<br>260-3(외 5필지) | 686 평 |     |

### 3. 도면: 별첨

1971. 11. 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

일단의주택지 조정사업시설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2 조 및 동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함.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1. 12. 3

서울특별시장

1. 시설 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2. 위치 : 시내 영등포구 방배동산 84-3 및 84-4
3. 시행자 : 육본 법무감실 국군통합 법무주택단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대령 박윤삼
4. 면적 : 9,043 평

가) 가로 조서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고 |
|----|----|----|----------------|------------------|--------------|--------------|----|
| 소로 | 2  | 1  | 8 <sup>m</sup> | 218 <sup>m</sup> | 영등포구방배동 84-4 | 영등포구방배동 84-4 |    |
| "  | 2  | 2  | 8              | 82               | "            | "            |    |
| "  | 3  | 1  | 6              | 86               | "            | "            |    |
| "  | 3  | 2  | 6              | 156              | "            | "            |    |
| "  | 3  | 3  | 6              | 38               | "            | "            |    |
| "  | 3  | 4  | 6              | 60               | "            | "            |    |
| "  | 3  | 5  | 6              | 128              | "            | "            |    |
| "  | 3  | 6  | 6              | 106              | "            | "            |    |
| "  | 3  | 7  | 6              | 116              | "            | "            |    |
| "  | 3  | 8  | 6              | 140              | "            | 영등포구방배동 84-3 |    |

나) 아등공원조서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방배국군통합<br>법무아등공원 | 영등포구 방<br>배동 84-4 | 283 평 | 택지조성면적의<br>3.1 % |

다) 쓰레기 적환장 조서

| 적 환 장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방배국군통합<br>적 환 장 | 영등포구방배<br>동 84-4 | 50 평 | 택지조성면적에<br>0.6% |

라) 주차장 조서

| 주 차 장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방배국군통합<br>주 차 장 | 영등포구방배<br>동 84-4 | 50 평 | 택지조성 면적에<br>0.6% |

끝.

◎서울특별시고시 제 75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설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설 결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2 조 다목 및 동법 제 10 조 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에 의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1년 12. 3.

서울특별시장

가) 가 로 조 서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고 |
|----|-----|----|----|-----|-----------|----------|----|
| 소로 | 3 류 | 1  | 6  | 129 | 반포동573-2답 | 반포동산 182 |    |
| "  | "   | 2  | "  | 131 | " 573-1 " | " 산 60   |    |
| "  | "   | 3  | "  | 68  | "산 64-1   | " " "    |    |
| "  | "   | 4  | "  | 82  | " 551-5 " | " " 93   |    |
| "  | "   | 5  | "  | 202 | "산 63"    | " " "    |    |
| "  | "   | 6  | "  |     | "         | "        |    |

나) 아 동 공 원 조 서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반포동 한전<br>아동공원 | 반포동 산<br>94 - 1 | 227 평 | 택지조성 면적<br>에 3% |

다) 적 환 장 조 서

| 적 환 장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한전 전환장  | 반포동산<br>94 - 1 | 50 평 |     |

끝.

©서울특별시고시 제 76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2 조 다목 및 동법 제 10조 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례인에게 보이게 함.

가) 가 로 조 서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점          | 총 점    | 비고                   |
|----|-----|----|----|-----|--------------|--------|----------------------|
| 소로 | 1 류 | 1  | 10 | 86  | 단지내<br>서측 경계 | 동측 경계  | 소로<br>1호<br>1호<br>연결 |
| "  | "   | 2  | "  | 117 | "<br>남측 경계   | 북측 경계  |                      |
| "  | 3 류 | 1  | 6  | 98  | "<br>서측 경계   | 동측 6도로 | 소로<br>3호<br>2호<br>연결 |
| "  | "   | 2  | "  | 113 | "            | "      | 소로<br>3호<br>3호<br>연결 |

나) 아동공원조서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명일, 제일<br>진흥아동공원 | 명일동산<br>산 4번지내 | 122 명 | 택지조조면적에<br>3% |

다) 적 환 장 조 서

| 적 환 장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명일, 제일진<br>흥 적환장 | 영일동산 4번<br>지내 | 50평 | 택지조성면적에<br>약 1% |

1971. 12. 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77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시설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10 조 제 1 항 동법제 6 조  
제 1 항에 의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에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가) 가 보 조 서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 장             | 기 점               | 종 점                | 비고 |
|----|-----|----|----------------|-----------------|-------------------|--------------------|----|
| 소로 | 2 류 | 1  | 8 <sup>m</sup> | 40 <sup>m</sup> | 영등포구시<br>홍동 130-1 | 영등포구시<br>홍동 130-1  |    |
| "  | 3 " | 1  | 6              | 101             | "                 | "                  |    |
| "  | 3 " | 2  | 6              | 150.4           | 8-1 호선            | 6-1호 선             |    |
| "  | 3 " | 3  | 6              | 86.8            | 6-2 "             | 영등포구 시<br>홍동 130-1 |    |
| "  | 3 " | 4  | 6              | 82.3            | 6-3 "             | 6-1호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고 |
|----|-----|----|----|-----|--------------------|--------------------|----|
| 소로 | 3 류 | 5  | 6  | 117 | 6-1호선              | 영등포구시<br>홍동 130-1  |    |
| "  | "   | 6  | 6  | 75  | "                  | 6-5호선              |    |
| 진입 | 도로  |    |    |     |                    |                    |    |
| 소로 | 2 류 | 2  | 8  | 190 | 영등포구 시<br>홍동 130-1 | 영등포구 시<br>홍동 130-1 |    |
| "  | 3 " | 7  | 6  | 128 | "                  | "                  |    |

나) 아동공원조서

| 공원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시흥검찰청<br>아동공원 | 영등포구<br>시흥동 130-1 | 202/평 | 사업면적에 대<br>한 비 3.1% |

1971. 12. 1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78 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를 신설 및 변경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음.
3. 노선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가 감           | 총 점            | 비고                      |
|-----|-----|----|----|----|-----|---------------|----------------|-------------------------|
| 신 설 | 수 록 | 2  |    | 8  | 120 | 중곡동<br>147-17 | 중 곡동<br>150-31 |                         |
| "   | "   | 2  |    | 8  | 380 | 상월곡동<br>70    | 상월곡동<br>37     |                         |
| 기 정 | "   | 2  |    | 8  | 5   | 평동 81         | 평동 81          | 각각치                     |
| 변 경 | "   | 2  |    | 8  | 20  | " 81          | "              | 전연결                     |
| 기 정 | "   | 3  |    | 6  | 20  | 응암동<br>144-10 | 응암동<br>81-157  | 위 치<br>변 경              |
| 변 경 | "   | 3  |    | 6  | 20  | 응암동<br>144-12 | 응암동<br>81-157  |                         |
| 기 정 | "   | 2  |    | 8  | 96  | 석관동<br>197- 4 | 석관동<br>205     | 학 교 부<br>지 내 위<br>치 변 경 |
| "   | "   | 2  |    | 8  | 100 | 석관동<br>197- 4 | 석관동<br>205     | "                       |
| 폐 지 | "   | 3  |    | 6  | 100 | 석관동<br>202- 1 | 석관동<br>205     | 학 교<br>부 자              |
| "   | "   | 3  |    | 6  | 86  | 석관동<br>205- 5 | 석관동<br>19-2 철  |                         |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함.

1971. 12. 10.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고시 제 79 호

1971 년도 서울특별시 제 2 회 추가경정예산

1971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수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제 2 회)을 다음과 같이 고사함.

1971. 9. 29

서울특별시장

| 회 계 별         | 추가경정예산액        | 기 정 예 산 액      | 금 회 추 가 액      |
|---------------|----------------|----------------|----------------|
| 총 계           | 66,954,752,000 | 67,970,983,000 | △1,016,231,000 |
| 일 반 회 계       | 36,032,611,000 | 35,412,597,000 | 620,014,000    |
| 특 별 회 계       | 30,922,141,000 | 32,558,386,000 | △1,636,245,000 |
| 한 강 개 발 비     | 4,212,843,000  | 4,017,843,000  | 195,000,000    |
| 주 택 비         | 6,350,531,000  | 6,859,531,000  | △ 509,000,000  |
| 토 지 구 획 정 리 비 | 7,475,694,000  | 7,425,694,000  | 50,000,000     |
| 택 지 조 성 비     | 93,196,000     | 93,196,000     | -              |
| 지 하 철 건 설 비   | 2,200,004,000  | 3,000,004,000  | △ 800,000,000  |
| 하 수 처 리 장 비   | 801,816,000    | 801,816,000    | -              |

| 회 계 별   | 추가경정예산액       | 기 정 예 산 액     | 금 회 추 가 액     |
|---------|---------------|---------------|---------------|
| 건설자재생산비 | 582,938,000   | 582,938,000   | -             |
| 유료도로비   | 281,756,000   | 281,756,000   | -             |
| 시민회관비   | 80,060,000    | 80,060,000    | -             |
| 재해구호비   | 46,994,000    | 46,994,000    | -             |
| 운수사업비   | 1,694,402,000 | 1,638,953,000 | 55,444,000    |
| 수 도 비   | 7,101,907,000 | 7,738,596,000 | △ 636,689,000 |

◎ 서울특별시고고 제 81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1971. 11. 11.

서울특별시장

| 허가<br>년월일  | 점용<br>장소                   | 수면<br>종류 | 점용<br>면적                   | 점용<br>목적          | 공작물<br>개요                         | 점용기간                 | 허가를<br>받은<br>자의<br>주소<br>성명 |
|------------|----------------------------|----------|----------------------------|-------------------|-----------------------------------|----------------------|-----------------------------|
| 71.<br>11. | 영등포<br>구신림동<br>168번<br>지 앞 | 하천       | (10평)<br>33 m <sup>2</sup> | 공작물<br>설치<br>(복개) | 복개 공사<br>길이=10<br>폭=3.5<br>높이=2.6 | 공사착공<br>일로부터<br>3개월간 | 영등포구<br>신림동<br>715<br>강동석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19 호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장용지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화양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장용지 및 일부토지 환지예정지 변경에 대하여는 71.10.2 건설부 공고제 88호로 동지구사업계획 일부 변경인가가 되었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변경함.

2.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조서 및 지정도는 당시 도시계획국 환지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날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1. 11. 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21 호

강변 5로 유료도로공사

유료도로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5로 유료

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노 선 명 : 강변 5로 유료도로

나. 공 사 구 간 : 동작동산 45 (국립묘지앞) ~ 제 3 한강교

다. 공 사 종 류 : 도로 축조

라. 공 사 착 공 일 : 70. 12. 26

마. 공 사 준 공 일 : 71. 8. 15

1971. 10. 26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23 호

영동제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2,3 공구 ) 환지에정지지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일부 토지 ( 2,3 공구 )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에 의거 환지계획의 인가를 득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별첨 도서와 같이 지정하며 동법제 5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용승인권을 부여함.

2. 환지에정지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환지과에 비치하고 동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임.

3. 환지에정지 지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름함.

1971. 10. 28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28 호

환치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1.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은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한 환치예정지를 변경 지정함.

2. 환치예정지 변경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환지과 또는 서대문구청 시민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1. 11. 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35 호

영동공무원아파트내 점포매각입찰

다음 표시 영동공무원 아파트내 점포를 지방재정법 제 52 조에 의거 일반 공매함.

1. 입찰장소 : 당시 입찰실
2. 입찰일시 : 1971년 11월 26일 10:00부터 12:00까지
3. 입찰등록 : 입찰과 동시에 등록을 접수함.
4. 입찰등록과 입찰방법

입찰서는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서와 입찰보증금(예치증)은 봉투에 넣어서 밀착한후(봉투이면에는 보증금 납부서 재산의 표시 및

입찰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입찰등록서를 봉투표면에 부착하여 투찰하여야 함.

####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금액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필히 입찰자의 명의로 당시 시금고(상업은행) 발행 예치증으로 교환하여야 함.

나. 유찰자의 보증금(예치증) 반환은 71.11.27 부터 반환함.

#### 6.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 이상 해당금액의 자립저축 필증과 지세, 국세, 납세필증, 화재보험 가입증서를 낙찰일로 부터 5일 이내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6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정된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치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함.

7. 재산매각후 평수에 증감이 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8. 도면 열람이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주택행정과(75-7698)로 문의하시기 바람.

9. 매각 재산의 표시

가. 영등공무원 아파트내 점포

| 구분 \ 호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점실용면적(평)  | 5.12  | 3.74 | 3.74 | 4.05 | 3.74 | 3.74 | 3.90 | 3.90 | 3.99 |
| 포공유면적(평)  | 2.31  | 1.68 | 1.68 | 1.82 | 1.68 | 1.68 | 1.75 | 1.75 | 1.79 |
| 계(평)      | 7.43  | 5.42 | 5.42 | 5.87 | 5.42 | 5.42 | 5.65 | 5.65 | 5.78 |
| 대지공유면적(평) | 10.61 | 7.76 | 7.75 | 8.38 | 7.75 | 7.75 | 8.07 | 8.07 | 8.26 |

| 구분 \ 호실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점실용면적(평)  | 3.48 | 2.25 | 2.25 | 2.61 | 2.61 | 2.25 | 2.25 | 2.61 | 2.61 |
| 포공유면적(평)  | 1.56 | 1.01 | 1.01 | 1.17 | 1.17 | 1.01 | 1.01 | 1.17 | 1.17 |
| 계(평)      | 5.04 | 3.26 | 3.26 | 3.78 | 3.78 | 3.26 | 3.26 | 3.78 | 3.78 |
| 대지공유면적(평) | 7.21 | 4.66 | 4.66 | 5.41 | 5.41 | 4.66 | 4.66 | 5.41 | 5.41 |

1971.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고제 236호

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추천공모

서울특별시 향토문화 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분을 찾아 시민화 더불어 1972년도(제 2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코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추천을 공모함.

1. 상의종류: 학술상, 예술상, 교육상, 언론상, 건설상

2. 시상내용: 상장, 상금(각 2백만원); 메달, 반지, 상패

3.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위원

나) 각 대학 총장, 학장, 대학원장

다) 위 1항의 대상분야에 속하는 각 문화단체의장

라) " " " " " " 각 연구기관의장

4. 추천받을 수 있는 자격

가) 향토문화에 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서울특별시민

나) 수상대상외 공로 및 업적이 5년(1967.1.1~1971.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

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지 못한 사람

※ 위 예 준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추천을 할 수 있음.

5. 상종류별 해당분야

가) 학술상: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등 학술분야

나) 예술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국악등 예술분야

다) 교육상: 학교교육, 사회교육, 체육, 사회사업등 교육분야

라) 언론상: 신문, 잡지, 출판, 방송등 언론분야

마) 건설상: 토목, 건축, 전기, 기계등 건설분야



6. 갖출서류

- 가) 추천서(서식) 1통
- 나) 공적서( ) 1통
- 다) 명함판 사진(4×6) 2장
- 라) 주민등록 초본 1통
- 마) 공적증빙 자료 각 10부

(자료에 따라 사진, 모형투시도, 청사진등도 가함)

7. 서류내는곳: 서울특별시 공보실

8. 서류받는기간: 1971.12.20(월) ~ 1972.1.10(수)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서식은 당시 공보실에서 배부함.

다) 수상자 및 시상일은 추후 발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75-7834, 72-9442

(공보실 문화계)로 문의하시기 바람.

1971. 11.

서울특별시 장 양 택 식

◎ 서울특별시공고제 237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33 - 39

박 회 철 의 41 명

구 분 : 김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 71년 수시분  
가. 납입기간 : 71.11.8 ~ 71.12.8

나. 납입장소 : 산업은행 시금교과 또는 도시계획국  
서무과

상기 고지서를 71.11.8일 각 납입 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  
여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납입기일을  
71.12.8일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 송달함.

1971. 11

서울특별시장

김포지구 ( 2 차 ) 공시 송달자

| 수납<br>번호 | 물 건 지      | 채 납액      | 소 유 자      |     | 비고 |
|----------|------------|-----------|------------|-----|----|
|          |            |           | 주 소        | 성명  |    |
| 53       | 목동 33 - 39 | 266,163   | 목동 33 - 39 | 박희철 |    |
| 44       | " 산 35 - 3 | 25,161    | " 산 35 - 3 | 김진만 |    |
| 6        | " 34 - 26  | 55,169    | " 34 - 26  | 박순옥 |    |
| 2        | " 35 - 5   | 375,328   | " 35 - 5   | 이종연 |    |
| 24       | " 34 - 22  | 235,132   | " 34       | 이병무 |    |
| 78       | " 33 - 35  | 420,364   | " 33 - 35  | 조규홍 |    |
| 31       | " 53       | 3,445,582 | " 53       | 이현숙 |    |
| 10       | " 34 - 2   | 349,500   | " 38       | 신구현 |    |
| 34       | " 40 - 4   | 145,863   | " 40 - 4   | 이준영 |    |

| 수납<br>번호 | 물 건 지         | 체납액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주 소           | 성 명           |     |
| 12       | 목 동 113 - 5   | 148,209   | 목 동 산 7       | 유진영           |     |
| 27       | " 48 - 2,4    | 1,278,263 | " 222         | 주우임<br>(의 1인) |     |
| 13       | " 116 - 6,28  | 116,899   | " 166 - 28    | 조순희           |     |
| 148      | 등촌동 273 - 1,4 | 164,549   | 올지로 6 가 18-21 | 삼본영수          |     |
| 144      | " 270 - 1     | 91,577    | 수유동 252 - 18  | 김복녀           |     |
| 58       | 목 동 31 - 6    | 37,051    | 익선동 166 - 37  | 최무진           |     |
| 128      | 등촌동 254 - 1,2 | 211,077   | 올지로 2 가 18-2  | 안석창           |     |
| 63       | 목 동 31 - 12   | 121,873   | 용산동 5 가 19-35 | 김영철           |     |
| 89       | " 34 - 14,15  | 337,747   | 용문동 1 - 90    | 김영진           |     |
| 67       | " 33 - 21     | 244,732   | 서교동 352 - 89  | 김인호           |     |
| 81       | " 33 - 38     | 217,350   | " 388 - 21    | 이창호           |     |
| 3        | " 35 - 4      | 209,622   | 공덕동 115 - 48  | 이래식           |     |
| 80       | " 33 - 37     | 156,265   | 대흥동 23        | 문정식           |     |
| 76       | " 33 - 34     | 176,569   | 노고산동 20 - 1   | 김광석           |     |
| 90       | " 33 - 16     | 75,947    | 도선동 126       | 손수익           |     |
| 121      | 등촌동 258 - 6   | 1,082,532 | 영등포동 4 가 73   | 홍순일           |     |
| 7        | 목 동 34 - 1    | 261,542   | 계기동 산 2       | 김윤수           |     |
| 92       | " 34 - 43     | 96,732    | 미아동 산 75      | 김재한           |     |
| 70       | " 33 - 24     | 133,551   | 미아동 503 - 74  | 권성기           |     |
| 117      | 등촌동 253 - 2   | 731,109   | 계기동 137       | 김주환<br>(의 1인) |     |
| 88       | 목 동 33 - 13   | 147,107   | 창천동 100 - 19  | 박상두           |     |

| 수납<br>번호 | 물 전 지      | 체납액     | 소 유 자        |     | 비고 |
|----------|------------|---------|--------------|-----|----|
|          |            |         | 주 소          | 성 명 |    |
| 85       | 목 동 33 - 8 | 231,073 | 창천동 100 - 19 | 박상두 |    |
| 62       | " 31 - 10  | 919,999 | 노량진동 307     | 공원철 |    |
| 65       | " 27 - 44  | 248,472 | 남가좌동 260-250 | 이종훈 |    |
| 18       | " 34 - 16  | 169,313 | 목 동 34 - 16  | 김기일 |    |
| 69       | " 33 - 23  | 144,680 | 화곡동 31 - 23  | 강인형 |    |
| 17       | " 34 - 12  | 93,414  | 목 동 34 - 12  | 김종학 |    |
| 42       | " 27 - 22  | 656,541 | " 27 - 22    | 김태영 |    |
| 14       | " 111 - 9  | 311,827 | 등촌동 296 - 18 | 백진석 |    |
| 75       | " 33 - 33  | 135,891 | 한강로 2 가 199  | 김희선 |    |
| 73       | " 33 - 31  | 125,663 | 용산동 3 가 4    | 송병채 |    |
| 54       | " 33 - 40  | 160,398 | 대구시남구남산동 41  | 송필수 |    |
| 51       | " 33 - 28  | 172,618 | "            | 송필수 |    |

◎ 서울특별시공고제 240 호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변경공고

당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중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었기 이를 공고함.

다 음

( 변경 전 )

| 지정<br>번호 | 기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제 품     |
|----------|----------|-----|----------|---------|
| 201      | 삼성인쇄주식회사 | 채복기 | 중구북창동 90 | 인쇄조판및지형 |

| 지정<br>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제품   |
|----------|----------|-----|---------------|------|
| 429      | 원림산업주식회사 | 문운정 | 성동구성수동 2가 282 | 어망   |
| 555      | 세일물산 "   | 김세호 | 성북구북창동 133    | 와이샤쓰 |
| 607      | 한국갈포공업 " | 오정수 | 서대문구노고산동107   | 갈포벽지 |

(변경후)

| 지정<br>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제품          |
|----------|----------|-----|---------------|-------------|
| 809      | 삼성인쇄주식회사 | 채복기 | 용산구원효로1가42-4  | 인쇄조판<br>릿지형 |
| 429      | 원림산업 "   | 문운정 | 성동구화양동 167-40 | 어망          |
| 555      | 세일물산 "   | 송태연 | 성북구창동 133     | 와이샤쓰        |
| 607      | 한국갈포공업 " | 오창환 | 서대문구증산동107-1  | 갈포벽지        |

1971. 11.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

김포, 경인, 역촌, 시흥, 도봉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연기

서울도시계획사업 김포, 경인, 역촌, 시흥, 도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 일부와 확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4 조 동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을 다음 조서와 같이 연기하였기 공고함.

사 업 연 기 조 서

| 지 구 명 | 당초준공예정일    | 연기준공일      | 비 고  |
|-------|------------|------------|------|
| 김포지구  | 71. 12. 30 | 73. 12. 30 | 2년연기 |
| 경인 "  | "          | 74. 12. 30 | 3년연기 |
| 역촌 "  | "          | 73. 12. 30 | 2년연기 |
| 시흥 "  | "          | "          | "    |
| 도봉 "  | "          | "          | "    |

1971.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장공고제 242 호

영동공무원아파트내 점포매각입찰

다음표시 영동공무원 아파트내 점포를 지방 재정법 제 52 조에 의거 일반 공매함.

1. 입찰장소 : 당시 입찰실
2. 입찰일시 : 1971. 12. 8. 11시부터 12시까지
3. 입찰등록 : 입찰과 동시에 등록을 접수함
4. 입찰등록과 입찰방법

입찰서는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서와 입찰보증금 ( 예치증 ) 은 봉투에 넣어서 밀착한후 ( 봉투이면에는 보증금 납부서 재산의 표시 및 입찰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입찰등록서를 봉

투표면에 부착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금액의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팔하 입찰자의 명의로 당시 시금고(상업은행) 발행 예치증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나. 유찰자의 보증금(예치증) 반환은 7.1.12.16부터 반환함.

### 6.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의 1 이상 해당금액을 자립저축필증과, 시세, 국세, 납세필증, 화재보험, 가입증서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정된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치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함.

7. 재산매각후 평수에 증감이 생활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8. 도면 열람이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주택행정과(75-7698)로 문의하시기 바람.

### 9. 매각 재산의 표시

| 가. 영동공무원 아파트내 점포 |         |      |         |      |      |      |      |      |      |      |      |
|------------------|---------|------|---------|------|------|------|------|------|------|------|------|
| 호실               | 구분      | 2    | 3       | 5    | 6    | 7    | 9    | 10   | 13   | 14   | 17.  |
|                  |         | 점    | 실용면적(평) | 3.74 | 3.74 | 3.74 | 3.74 | 3.90 | 3.99 | 3.48 | 2.61 |
| 포                | 공유면적(평) | 1.68 | 1.68    | 1.68 | 1.68 | 1.75 | 1.79 | 1.56 | 1.17 | 1.17 | 1.17 |
|                  | 계       | 5.42 | 5.42    | 5.42 | 5.42 | 5.65 | 5.70 | 5.04 | 3.78 | 3.78 | 3.78 |
| 대지               | 공유면적(평) | 7.76 | 7.75    | 7.75 | 7.75 | 8.07 | 8.26 | 7.21 | 5.41 | 5.41 | 5.41 |

1971.

서울특별시장양양택식

을 중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시험 합격자 시험번호

제 4 류

|    |    |    |    |    |
|----|----|----|----|----|
| 1  | 2  | 4  | 5  | 7  |
| 8  | 16 | 19 | 20 | 21 |
| 26 | 29 | 30 | 34 | 35 |
| 37 | 38 | 39 | 41 | 45 |
| 46 | 49 | 50 | 51 | 54 |
| 55 | 57 | 60 | 61 | 64 |
| 65 | 67 | 70 | 71 | 72 |
| 73 | 74 | 75 | 77 | 78 |
| 79 | 81 | 82 | 85 | 86 |



|     |     |     |     |     |
|-----|-----|-----|-----|-----|
| 91  | 92  | 95  | 98  | 99  |
| 100 | 107 | 112 | 113 | 115 |
| 117 | 120 | 121 | 124 | 126 |
| 129 | 136 | 139 | 142 | 143 |
| 144 | 145 | 146 | 147 | 148 |
| 150 | 153 | 156 | 160 | 165 |
| 167 | 168 | 171 | 175 | 181 |
| 183 | 190 | 191 | 192 | 195 |
| 197 | 198 | 199 | 200 | 201 |
| 202 | 203 | 204 | 205 | 206 |
| 207 | 209 | 210 | 216 | 218 |
| 219 | 221 | 223 | 224 | 225 |
| 226 | 227 | 229 | 230 | 231 |
| 232 | 236 | 237 | 239 | 242 |
| 243 | 244 | 245 | 247 | 248 |
| 253 | 257 | 258 | 260 | 262 |
| 263 | 265 | 266 | 268 | 269 |
| 270 | 271 | 272 | 273 | 276 |
| 278 | 279 | 280 | 282 | 286 |
| 287 | 291 | 293 | 294 | 298 |
| 299 | 300 | 304 | 306 | 307 |
| 309 | 312 | 317 | 318 | 319 |
| 320 | 322 | 323 | 325 | 326 |

|     |     |     |     |     |
|-----|-----|-----|-----|-----|
| 327 | 328 | 329 | 330 | 332 |
| 333 | 338 | 339 | 340 | 342 |
| 343 | 344 | 346 | 348 | 349 |
| 350 | 351 | 353 | 355 | 357 |
| 358 | 360 | 361 | 362 | 365 |
| 366 | 370 | 372 | 373 | 374 |
| 375 | 377 | 378 | 381 | 382 |
| 383 | 384 | 385 | 386 | 387 |
| 388 | 389 | 390 | 392 | 394 |
| 396 | 397 | 398 | 399 | 400 |
| 401 | 403 | 404 | 405 | 407 |
| 408 | 409 | 411 | 412 | 413 |
| 414 | 415 | 416 | 417 | 418 |
| 421 | 422 | 423 | 424 | 425 |
| 426 | 427 | 429 | 432 | 433 |
| 434 | 435 | 436 | 437 | 438 |
| 439 | 440 | 442 | 443 | 445 |
| 446 | 447 | 449 | 451 | 456 |
| 457 | 463 | 464 | 466 | 467 |
| 468 | 469 | 471 | 473 | 474 |
| 478 | 482 | 483 | 484 | 486 |
| 489 | 492 | 493 | 494 | 496 |
| 497 | 501 | 503 | 504 | 505 |

|     |     |     |     |     |
|-----|-----|-----|-----|-----|
| 506 | 507 | 508 | 510 | 511 |
| 512 | 513 | 514 | 515 | 517 |
| 518 | 520 | 521 | 523 | 524 |
| 528 | 529 | 531 | 532 | 535 |
| 537 | 538 | 540 | 541 | 542 |
| 543 | 544 | 545 | 546 | 548 |
| 549 | 550 | 551 | 552 | 553 |
| 554 | 555 | 556 | 557 | 558 |
| 560 | 562 | 563 | 566 | 568 |
| 569 | 571 | 574 | 575 | 576 |
| 577 | 578 | 579 | 580 | 581 |
| 582 | 583 | 584 | 585 | 586 |
| 589 | 590 | 591 | 592 | 593 |
| 594 | 597 | 604 | 605 | 608 |
| 609 | 612 | 613 | 614 | 615 |
| 617 | 621 | 626 | 628 | 631 |
| 632 | 634 | 635 | 637 | 638 |
| 640 | 641 | 642 | 646 | 650 |
| 651 | 652 | 657 | 659 | 660 |
| 663 | 664 | 665 | 666 | 667 |
| 668 | 669 | 670 | 671 | 672 |
| 675 | 678 | 680 | 682 | 683 |
| 684 | 686 | 687 | 688 | 689 |

|     |     |     |     |     |
|-----|-----|-----|-----|-----|
| 691 | 693 | 695 | 698 | 701 |
| 703 | 705 | 707 | 708 | 712 |
| 713 | 715 | 716 | 718 | 719 |
| 720 | 721 | 722 | 723 | 725 |
| 727 | 729 | 732 | 733 | 739 |
| 740 | 741 | 742 | 744 | 746 |
| 747 | 748 | 749 | 750 | 751 |
| 752 | 753 | 757 | 759 | 760 |
| 762 | 769 | 771 | 772 | 776 |
| 777 | 778 | 780 | 782 | 787 |
| 788 | 792 | 793 | 794 | 795 |
| 796 | 798 | 800 | 802 | 803 |
| 804 | 805 | 807 | 808 | 809 |
| 811 | 812 | 814 | 815 | 819 |
| 820 | 821 | 822 | 825 | 827 |
| 828 | 829 | 830 | 834 | 835 |
| 839 | 840 | 841 | 842 | 843 |
| 845 | 852 | 855 | 857 | 858 |
| 860 | 863 | 865 | 866 | 873 |
| 874 | 875 | 879 | 880 | 881 |
| 882 | 883 | 884 | 886 | 887 |
| 888 | 889 | 890 | 891 | 892 |
| 893 | 896 | 897 | 898 | 899 |

|      |      |      |      |      |
|------|------|------|------|------|
| 900  | 901  | 902  | 904  | 907  |
| 911  | 912  | 913  | 914  | 915  |
| 916  | 917  | 918  | 919  | 920  |
| 921  | 922  | 927  | 928  | 929  |
| 930  | 931  | 935  | 936  | 937  |
| 940  | 942  | 943  | 945  | 947  |
| 948  | 952  | 956  | 957  | 958  |
| 959  | 962  | 968  | 969  | 972  |
| 974  | 977  | 978  | 979  | 982  |
| 983  | 988  | 989  | 990  | 991  |
| 994  | 995  | 996  | 997  | 998  |
| 999  | 1001 | 1002 | 1003 | 1009 |
| 1010 | 1011 | 1016 | 1020 | 1021 |
| 1028 | 1032 | 1036 | 1038 | 1040 |
| 1042 | 1043 | 1044 | 1045 | 1047 |
| 1048 | 1049 | 1051 | 1054 | 1057 |
| 1060 | 1061 | 1064 | 1069 | 1071 |
| 1080 | 1083 | 1087 | 1089 | 1090 |
| 1092 | 1094 | 1097 | 1102 | 1103 |
| 1108 | 1112 | 1114 | 1115 | 1116 |
| 1118 | 1121 | 1123 | 1124 | 1125 |
| 1126 | 1129 | 1130 | 1133 | 1134 |
| 1137 | 1138 | 1139 | 1140 | 1147 |

|      |      |      |      |      |
|------|------|------|------|------|
| 1148 | 1149 | 1150 | 1151 | 1152 |
| 1153 | 1154 | 1155 | 1157 | 1160 |
| 1165 | 1166 | 1168 | 1171 | 1172 |
| 1176 | 1178 | 1180 | 1181 | 1184 |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 1197 | 1198 | 1199 | 1200 | 1201 |
| 1202 | 1204 | 1205 | 1206 | 1215 |
| 1216 | 1217 | 121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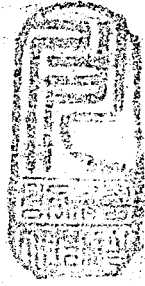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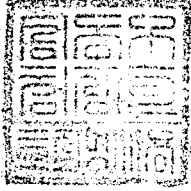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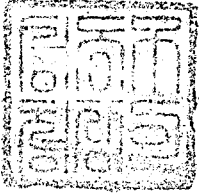
|       |      |      |      |      |
|-------|------|------|------|------|
| 계 1 류 | 800  | 800  |      |      |
| 7001  | 800  | 800  | 800  |      |
| 계 2 류 | 900  | 900  | 900  |      |
| 2001  | 9001 | 9001 | 9001 | 900  |
| 계 3 류 | 0001 | 0001 | 0001 | 0001 |
| 3001  | 3002 | 3003 | 3004 | 3005 |
| 3006  | 3001 | 3001 | 3001 | 3001 |

직인 및 계인 개각 공고

성동구청 직인파 계인 및 서대문구청장직인은 다음 인  
형과 같이 개각하여 1971. 10. 1 부터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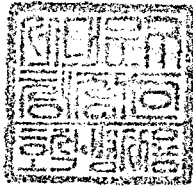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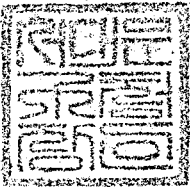
1. 직 인 명
- 가. 성동구청장장의 직인 및 계인
  - 나. 서대문구청장의 직인
1971. 10. 1
- 서울특별시 강

인 형 (성동구청장인)



( 일 반 용 ) ( 호 적 병 사 용 )

인 형 (서대문구청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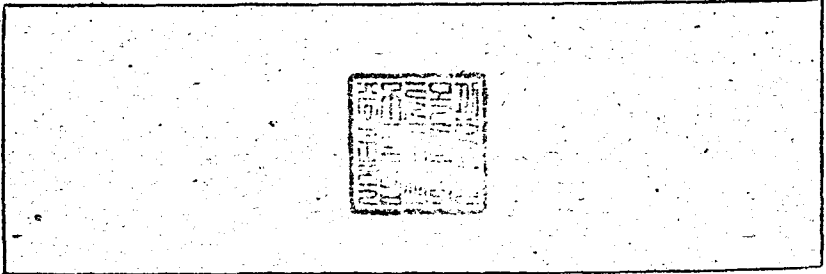


( 일 반 용 ) ( 호 적 병 사 용 )

직인등록공고

인

영



① 중구 토목과 분임수입금 출납원

② 사용개시일 : 1971. 10. 8.